부록 1

회원연맹을 위한 세이프가딩(보호) 정책 표준안

! 본 문서는 아동 및 성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기관과 기타 기관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 정책이 현지 문화를 고려하고 현지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회원연맹이 채택하고 그 회원 및 지역사회 전반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연맹은 회원들에게 자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적극 권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 문서 전반에 걸쳐 대괄호 [] 안에 회원연맹의 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목차

1 서문
2 정책 이행 선언 및 원칙
3 정의
4 정책의 적용 범위
5 우려 사항 신고
6 신고 절차 흐름도
7 행동 강령
8 채용
9 교육 및 훈련
10 징계 절차
11 검토
12 모니터링

1 서문

[회원연맹]은 (국가) 내 육상 경기를 진흥하고, 아동과 성인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즐겁고 유쾌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세이프가딩 정책(이하 “본 정책”)은 아동과 성인이 안전하게 육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회원연맹] 및 [클럽]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을 준수하고 본 정책에 담긴 모범 관행의 원칙을 장려함으로써, 회원연맹은 그 공동체가 육상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영감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대는 남성, 여성 또는 아동에 의해 자행될 수 있습니다. 학대는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스포츠 및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어떠한 지역도 그 영향에서 예외이거나 면역되어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학대, 괴롭힘 및 착취는 개인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강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를 악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령, 장애, 경제적 상황 또는 처지로 인해 취약한 사람일수록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정책 이행 선언 및 원칙

[회원연맹]은 육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를 당하지 않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회원연맹]은 본 정책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이러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회원연맹]은 이 권리가 개인의 출신, 피부색, 연령,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과 관계없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회원연맹]은 본 정책이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선수, 지도자(선수 지원 인력 전원 포함), 경기 임원, 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이들 모두는 이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기반이 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사람은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출신, 연령, 민족, 능력,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신념 또는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도 없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육상에 참여하고, 이를 즐기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이든 성인이든 모든 사람은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자신이나 타인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때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연맹]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이사회 구성원이 본 정책의 이행 및 집행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 정책의 원칙을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반영하기 위해 ‘보호 홍보대사’를 임명합니다.

- ✓ 보호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며, 이를 '보호 담당관'이라 칭합니다.
- ✓ 다른 사람과 그 행동에 대해 걱정이나 우려가 있을 때 이 지정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합니다.
-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우려가 제기될 경우 따르게 될 절차를 인지하도록 보장합니다.
- ✓ 행동 강령, 규정 및 징계 절차를 포함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갱신합니다.
- ✓ 우려를 제기하거나 불만 또는 의혹을 제기한 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 ✓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우려 사항 및 불만 처리 방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 모든 우려 사항, 의혹 및 불만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립니다.
- ✓ 모든 조사와 청문을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로 작성되는 보고서나 위험 평가에 편향이 없도록 합니다.
- ✓ 우려 사항, 불만 또는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하고 안전하게 취급합니다.
- ✓ 직원이든 자원봉사자든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직책에 임명하고, 신원 조회와 추천인 확인을 실시하며, 적격자만 임명되도록 합니다.
- ✓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신하여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는 지방 당국, 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합니다.

3 정의

학대, 괴롭힘 및 착취

아래에서는 학대, 괴롭힘 및 착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자행될 수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지위에 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권한을 가질 때 학대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개인은 보호받아야 하며,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 경기 임원 또는 자원봉사자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서적(심리적) 학대**란 상대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거부하거나, 감금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원치 않는 행위, 또는 개인의 정체성, 존엄성 또는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학대 형태의 핵심을 이루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곳에는 정서적 학대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대면 괴롭힘(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발로 차기, 때리기, 물기 또는 화상 입히기 등 부상이나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고의적이거나 원치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음주 강요나 조직적인 도핑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연령이나 체격에 맞지 않는 훈련 등 강요되거나 부적절한 신체 활동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환경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의 야망과 동료 압력으로 인해 선수, 지도자 또는 양측 모두가 과도한 훈련 부하 및/또는 경기 일정을 부과하거나 감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강요되거나 과도한 훈련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되고 달성 가능한 경기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선수와 지도자 간의 대화는 수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훈련 요구 수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의 건강과 안녕에 반할 수 있는 야망을 절제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성적 학대란 동의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거나, 강압 또는 조종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의 모든 성적 성격의 행위를 말하며, 신체 접촉(삽입 여부 불문) 여부를 불문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이미지를 보거나 제작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타인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또는 학대를 준비하기 위해 상대를 길들이는 행위(그루밍)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길들이기)란 어떤 사람이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선수와 관계를 형성하고 선수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수를 조종하고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선수의 가족, 지원 인력 및 친구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은 이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 가해자가 선수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수를 조종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악용하여 선수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가해자가 선수에 대해 가진 권한은, 가해자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선수를 고립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굴욕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거나 달갑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권력형 괴롭힘은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통상 직장에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발생합니다. 권력형 괴롭힘에는 따돌림과 부적절한 업무 배정(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의 업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이든 성적 성격을 띤 모든 원치 않거나 달갑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는 신체, 옷차림 또는 사생활에 관한 원치 않거나 모욕적인 은밀한 질문, 성적 암시가 담긴 농담, 동의 없는 성적 행위의 제안 또는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서면 메시지 또는 성적 내용을 담은 기타 모든 형태의 원치 않는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예로는 빤히 쳐다보기, 몸짓 또는 성적 암시가 담긴 이미지 공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희롱의 예로는 꼬집기, 키스 시도, 토닥이기 또는 만지기 등 성적 성격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습니다.

착취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 사람 및/또는 그 사람의 재산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 이익은 심리적, 평판적 또는 상업적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가 그 사람의 명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매매되거나 협상될 때 착취에 해당합니다. 육상에서의 예로는 선수의 연령이나 국적을 사기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선수를 대리하여 사기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스폰서십 수입이나 재정 지원 약정에서 부당한 몫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착취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그 예로는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그리고 선수가 아직 아동일 때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방임이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피해의 임박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과 관련되지만, 지도자나 팀 책임자가 선수에 대해 지는 의무와 같이 타인에 대한 돌봄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고온 시 충분한 물, 저온 시 적절한 의복, 적절한 음식, 숙소 또는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대, 괴롭힘 및 착취는 출신, 종교, 피부색, 신념, 민족적 출신,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운동 능력 또는 이러한 특성의 조합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한 개별 사건일 수도 있고 일련의 사건일 수도 있으며,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고의적이거나, 요청받지 않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돌림, 모욕 및 방임은 모두 괴롭힘, 학대 또는 착취의 또 다른 측면이며, 본 정책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에는 경제적 학대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재정적 이익을 주지만 본인에게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이롭지 않은 계약이나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동이거나, 누구에게도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합의 조건의 효과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지 못한 경우, 강압의 요소는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때로 한 사람에게는 학대가 아닐 수 있지만, 그 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취약성 때문에 학대적이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연령, 능력 또는 기타 형태의 취약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학대, 괴롭힘 및 착취는 흔히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력 남용, 즉 영향력, 힘 또는 권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흔히 연령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지만, 또래, 즉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선수들 사이에서, 또는 지도자, 경기 임원 또는 육상과 관련된 기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또래 간 학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다른 유형의 우려 사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학대는 부모,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도 자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아동'이라는 용어는 18세 미만의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세이프가딩(보호)란 아동이든 성인이든 위험에 처한 사람을 학대, 괴롭힘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세이프가딩의 핵심입니다. 육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학대, 괴롭힘 및 착취가 예방되고, 아동과 성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청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하고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원연맹]과 그 선수, 경기 임원, 직원 및 [회원연맹]과 관련된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경기 임원, 자원봉사자, 선수 지원팀 구성원, 부모, 보호자 및 [회원연맹이 소재한 국가] 내 육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본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개인이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우려 사항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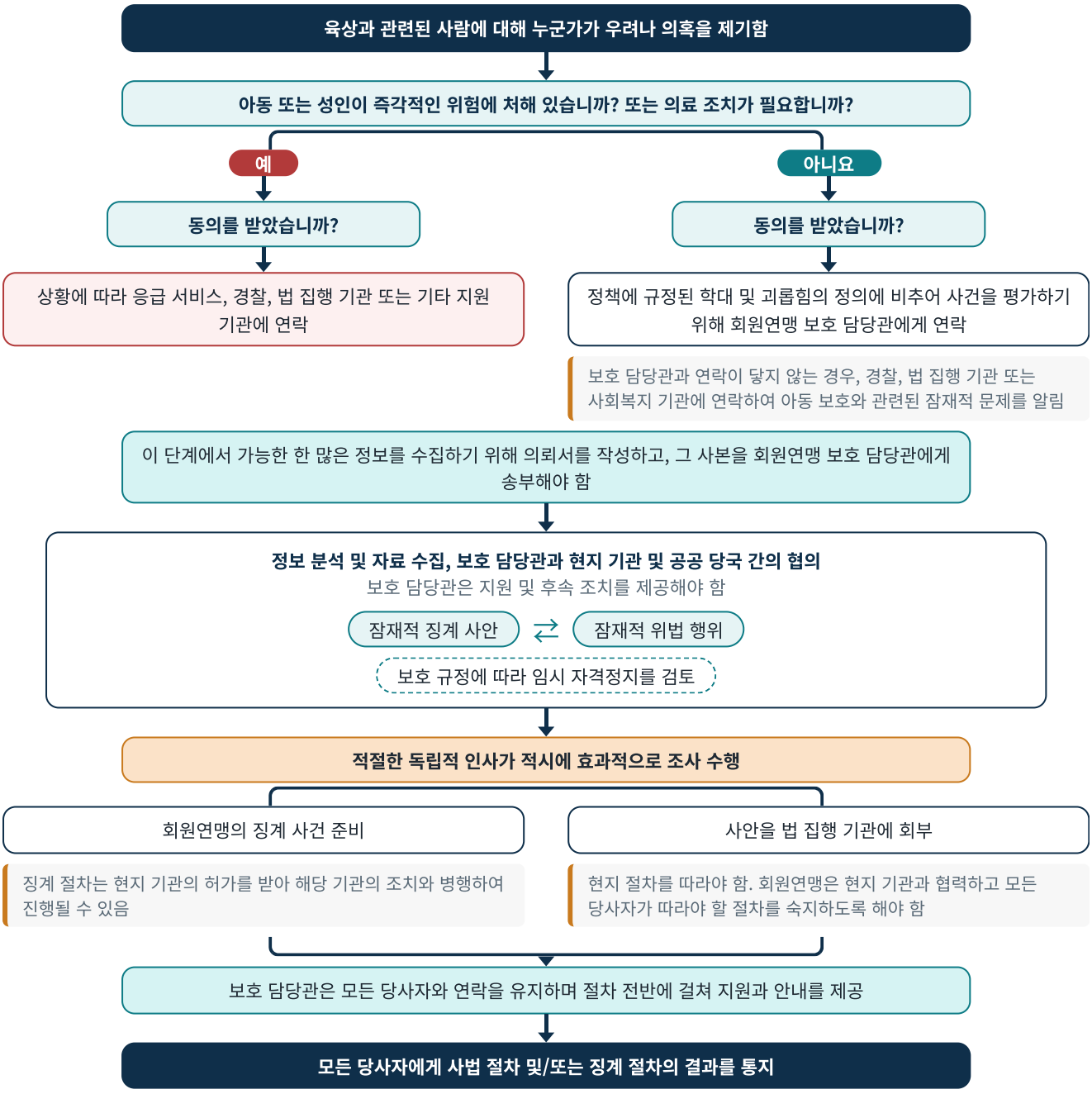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누구도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나 성인이 어떤 형태로든 학대, 괴롭힘 또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평가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우려를 [회원연맹] 보호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연맹] 보호 담당관이 이를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율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 서비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연령과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사안을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능력은 12세 미만 아동과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간에, 그리고 아동과 성인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사안을 신고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법률이나 절차에서 다루는 영역일 수 있으며, 본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원연맹]에 신고된 우려 사항, 의혹 및 기타 사안은 해당 사안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우려'에 관한 것인 경우, 조사자가 [회원연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려나 의혹이 심각할수록 조사하는 사람이 [회원연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려 사항이 경찰에 회부되면 경찰이 조사를 수행합니다.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회원연맹]이 실시하는 모든 조사는, 조사가 편견 없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회원연맹]과 관련이 없으며 조사를 위해 위촉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6 신고 절차 흐름도

[이는 현지 절차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흐름도입니다.]



7 행동 강령

회원연맹은 직원, 임원 및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위한 행동 강령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 선수, 의료 지원 인력, 경기 임원 및 행사 코디네이터 등 다른 집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령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일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집단이 강령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요구받아야 합니다.

[회원연맹]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을 두고 있습니다.

- 지도자 행동 강령
- 선수 행동 강령
- [[회원연맹]이 수립하기로 결정한 기타 강령]

위의 모든 행동 강령은 타인을 존중, 평등, 공정 및 존엄으로 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 강령들은 육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회원연맹]이 기대하는 행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해당 집단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규칙의 존재, [회원연맹]의 기대, 그리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강령은 관련 집단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행동 강령은 관련 집단에 제공되며, 게시판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회원 갱신 신청서 등 모든 서면 문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련 행동 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조사 및 가능한 징계 조치를 위해 이를 우려 사항으로 보호 담당관에게 회부해야 합니다. [회원연맹]이 별도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행동 강령 위반은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채용

아동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모든 직무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직원이든 자원봉사자든, 신원 조회 또는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면접에 참석하고 두 명의 추천인을 제시해야 하며, 임명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면접에는 지원자 본인과 경력에 관한 질문은 물론 보호에 관한 지식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추천인은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중 한 명은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여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동 관련 업무나 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자의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선발된 지원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보호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9 교육 및 훈련

[회원연맹]의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및 경기 임원은 조직 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보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 대한 책임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최소 연 1회 또는 2년마다].

10 징계 절차

본 정책 및 [회원연맹] 보호 규정의 위반은 [회원연맹]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추가 지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징계 절차를 참조해야 합니다.

11 본 정책의 검토

본 정책은 매년 검토됩니다.

12 모니터링

본 정책과 그 이행은 [회원연맹]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보호 기관에 의해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